

## 소방도로편입지(삼우연립)보상요구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성명 : 한재봉 외 23명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48-1번지 삼우연립 가동 104호

나. 소개의원 : 김 삼 중 의원

다. 접수일자 : 2000. 10. 9

라. 회부일자 : 2000. 10. 10

마.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00. 10. 17) 상정 및 의결

### 2. 청원요지

- 원미구 도당동 소재 삼우연립 주택 주민들이 84년도 당시에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연립주택부지 60여 평을 수용하여 소방도로로 개설함으로써
- 그간 면적이 협소하여 재건축이 불가하고 영구적인 거주가 어려워 보수도 불가하고 건물은 균열이 가고 붕괴위험도 있으므로 즉시 현시가로 보상하고 상동지구 아파트 입주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 3. 취지설명요지(취지설명 : 김삼중 의원)

- 원미구 도당동 소재 삼우연립 주민은 지난 84년도에 연립주택부지 일부를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60여 평을 수용하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였고,
- 특히 소방도로로 연립주택 일부가 포함되어 연립주택을 철거해야만 도로기능이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주민과는 보상철거를 약속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근 20여 년 간 무단으로 소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 또한 도로상에 포함된 연립주택의 모퉁이를 통과하는 차량이 부딪치거나 도로변 주차차량이 건물에 부딪치는 사례가 빈번하여 건물은 균열이 가고 붕괴위험 마저도 있음
- 현재로는 면적협소로 재건축도 불가하고 부천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보수를 미루다 보니 점점 건물이 노후되어 현재는 보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여 입주민의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는 상태이므로 부천시는 즉시 현시가로 보상하고 상동지구 아파트 입주를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부지를 보상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함</li> </ul>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도로를 개설할 당시 보상매입을 못 한 이유는?</li> <br/><br/><br/><br/><br/><br/> <li>○ 청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보상할 용의가 있는가?</li> <br/><br/><br/><br/><br/><br/> <li>○ 용도지역을 변경해서라도 청원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지 않나?</li> <br/><br/><br/><br/><br/><br/> <li>○ 도로편입부분만 보상매입 하려면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은가?</li> <br/><br/><br/><br/><br/><br/> <li>○ 도로편입부분만 보상하려면 보상액은 얼마인가?</li> <br/><br/><br/><br/><br/><br/> <li>○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임대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는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년도 도로개설 당시 보상매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도로편입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부지를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협의가 결렬되어 보상매입을 못 하였음</li> <br/><br/><br/><br/><br/><br/> <li>○ 소방도로 편입부분의 전체를 보상매입할 경우 소공원을 조성하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하여야 하나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li> <br/><br/><br/><br/><br/><br/> <li>○ 가능하면 전체 부지를 매수하도록 검토하겠음</li> <br/><br/><br/><br/><br/><br/> <li>○ 협의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됨</li> <br/><br/><br/><br/><br/><br/> <li>○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한 보상액이 책정되겠지만 약 1억 8천만원 정도임</li> <br/><br/><br/><br/><br/><br/> <li>○ 임대아파트는 세입자만 가능함</li> </ul> |
|--|---|

## 5. 심사결과

- 부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 ※ 소방도로편입지(삼우연립)보상요구에 대한 청원 의견서 1부

## 의 견 서

의안번호	제390호		부천시의회
건 명	소방도로편입지(삼우연립)보상요구에 관한 청원		
청 원 인	주 소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48-1 삼우연립 가동 104호	
	성 명	한재봉 외 23인	
소개의원	김 삼 종 의원		
소개연월일	2000. 10. 9	처리연월일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2000. 10. 20)

소방도로편입지(삼우연립)보상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

원미구 도당동 소재 삼우연립은 1979년도에 1,618m<sup>2</sup>(450평) 대지에 2개 동 24세대로 건축하

였으나 84년도에 부천시가 삼우연립 부지 200m<sup>2</sup>(60평)를 일반적으로 도로로 편입하여 현재까지 보상도 없이 무단으로 점용 사용함으로써 도로상에 포함된 연립주택의 모퉁이를 통과차량이 부딪치거나 도로변 주차차량이 건물에 부딪치는 사례가 빈번함으로써 건물은 균열이 가고 붕괴위험 마저도 나타나는 실정이며 또한 도로편입으로 인하여 면적이 협소하여 재건축도 불가한 상태이고 부천시가 금방이라도 보상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보수를 미루다 보니 현재는 건물노후로 보수도 불가한 상태이므로 부천시는 그 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지급토록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을 정확히 파악한 후 토지이용계획(주차장, 또는 소공원 등)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민의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임

2000년 10월 20일

부천시의회 의장

### 청원 소개 의견서

청원건명	소방도로편입지(삼우연립)보상요구에관한청원		
청원인	주 소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48-1 삼우연립 가동 104호	
	성 명	한재봉 외 23인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김 삼 중 ⑨		
소개연월일	2000. 10. 9		

#### 소 개 의 견

- 도당동 소재 삼우연립 주민은 지난 84년도에 연립주택부지 일부를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60여 평을 수용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하였고
- 특히 소방도로로 연립주택 일부가 포함되어 연립주택을 철거해야만 도로기능이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주민과는 보상칠거를 약속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근 20여 년 간 무단으로 소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 또한 도로상에 포함된 연립주택의 모퉁이를 통과차량이 부딪치거나 도로변 주차차량이 건물에 부딪치는 사례가 빈번하여 건물은 균열이 가고 붕괴위험 마저도 나타나고 있음

- 현재로는 면적협소로 재건축도 불가하고 부천시가 금방이라도 보상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보수를 미루다 보니 보수도 불가한 상태이며 따라서 건물 노후에 대한 보수가 불가능하여 주민의 원성이 가속화되어 청원을 제출하는 사항임
- 삼우연립은 79년도에 1,618㎡(450평)의 대지에 2개 동 24세대로 건축하였으며 지난 84년도에 주민 동의도 없이 부천시가 200㎡(60여 평)를 소방도로로 강제 편입하였고 주민은 부천시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부천시는 약속만하고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실정 이므로 주민들은 즉시 현시가로 보상하고 상동지구 아파트 입주를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함

## 청 원 서

우리는 원미구 도당동 248-1, 2호의 삼우연립에 거주하는 24세대 주민들입니다.

저희 연립에 거주하는 주민은 맞벌이를 해야만 부모자식을 부양할 수 있는 서민으로서 낮에는 노부모님들과 어린 자식들만 집을 지키는 실정에 있으며

부천시는 지난 79년도에 건축한 삼우연립 부지 200㎡(60여 평)를 84년도 봄에 임박적으로 수용하여 소방도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편위 면적에 대해서는 한푼의 보상도 없이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이에 대한 부당성을 관계기관에 수없이 건의도 하였지만 그 당시로써는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시청에 건의하면 이 부서 저 부서 평계만 대며 현재까지 20여 년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우지 못한 저희 불찰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희망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저희 땅에다 주차도 제대로 못 하고 허구한날 주위사람들과 말다툼을 해야만 하는가 하면 이게 도로지 너희 땅이냐? 하는 모욕을 당해가며 우리 땅임에도 권리행사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설움을 당하는가 하면 술에 취한 취객은 벽에다 방뇨를 하고 주차차량에는 금을 긋고 발로 차는가 하면 또한 도로변 구석에는 각종 쓰레기를 수북하게 쌓아놓아 악취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무수히 전의도 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늘어 놓을뿐 아직까지 하나도 해결해 준 일이 없었습니다.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연립주택이 도로에 걸쳐있으므로 운전부주의로 연립주택과 부딪치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또한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깜짝 놀라 나와보면 차를 주차하다 벽에 부딪치는 사고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며 주차하지 말라고 통제하면 욕설을 해가며 이게 너희 땅이냐 도로지하면서 경계석을 가리키며 욕을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남의 땅을 무단으로 수용하여 도로를 개설하였으면서도 왜 인도도 없는 경계석을 설치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로에 저희 재산권 확보를 위해 도로편입용지를 찾아 담을 쌓아 도로를 봉쇄해야 하는지요?

그런데 남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도 관계기관은 무성의하게 여직껏 저희 주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7년도에는 도시가스를 설치하며 소방도로로 편입된 도로부지에 도시가스관을 설치하면서 도로지면을 높임으로써 도로상의 빗물이 연립주택으로 역류하여 집집마다 지하층에 물이 차 있는 실정이므로 지하층을 이용하지 못함은 물론 주택의 수명이 낮아지고 벽면은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만약 84년도에 주택을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하였다면 그 당시의 보상가로는 30평형 아파트(평당 180만 원 정도)를 분양받을 수도 있었으나 현재로는 전세값도 안 되는 형편이므로 부천시가 원인을 제공한 바 주민의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즉시 현시가로 보상하고 상동신도시 아파트 입주를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우리 연립을 방문하면 알 수 있겠지만 79년도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불과 5년 후에 1,618m<sup>2</sup>(450평)의 대지 중 200m<sup>2</sup>(60여 평)를 소방도로로 강제 편입하여 면적협소로 재건축도 불가하므로 수없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청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는 그간 시장님은 물론 관계공무원들과도 수없이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과정에서 우리의 열악한 현실을 이해하시고 시장님은 도당동 시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약속하고 나서도 전혀 조치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도록 분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청에서 장구치고 머리띠 두르고 목소리 높여가며 자기주장을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요?

저희는 10여 년이 넘도록 저희 땅을 무단수용하고 아무 보상도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천시의 의 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사는 곳을 현지 확인하여 직접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저희 주민은 고맙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할까?

중동 신도시가 생기기 전부터 저희 고통은 말도 못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최고 의결기관인 의원님들에게 우리의 간청을 받아들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청원인 원미구 도당동 248-1 삼우연립 가동 104호 한재봉

원미구 도당동 248-1 삼우연립 가동 101호 김광수

원미구 도당동 248-1 삼우연립 나동 104호 김복길